

의안번호	2214039
의 퇴 인	김형동의원
회 답 일	2026.1.28.
추계번호	25B59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1억원(연평균 4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21	—	—	—	—	21	4

주 1. 추계기간 동안 도청이전신도시는 경상북도, 충청남도 도청 이전 2건으로 가정하며, 사업비는 유사사례 평균 사업비를 적용함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도청이전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5.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6.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 제1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장·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19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9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이전기관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33조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7. 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연구소·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8. 제3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9.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됨(제4항)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민간위원: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8	안 제34조 (도청이전신도시 관리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35조 (이전추진단 설치)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36조 (도청이전신도시 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함(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37조 (중전부동산의 현황조사)	도지사는 중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39조 (중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중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함.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중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중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3	안 제40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4	안 제43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44조 (~~지식산업센터~~ 의 설립 및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47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7	안 제48조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지원하고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2항) 1.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4. 도청이전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도청이전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7. 도청이전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8	안 제49조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재량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 성비·생태계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개 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제1항)	재량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청이전신도시에 소재한 시·군에 대하여 「지 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2항)	
19	안 제50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 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 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기반 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개정안은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현행법과 개정안 재정수반요인별 비교표

현행법	개정안
국가의 예산지원(제4조)	국가의 예산지원(안 제4조)

현행법	개정안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제11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안 제12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안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안 제20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안 제33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안 제34조)
이전추진단 설치(제29조)	이전추진단 설치(안 제35조)
중전부동산의 현황조사(제30조)	중전부동산의 현황조사(안 제37조)
중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제31조의2)	중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안 제39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40조)
자금지원 등(제34조) - 의료·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지원(제40조)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2항)	연구기관·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안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안 제47조)

□ 현행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동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재정수반요인별 사업추진 및 추계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6조) 도청이전이 진행중인 충청남도과 경상북도의 경우, 향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시기와 수립방법 등이 미정
 - 유사사례 사업비를 바탕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함
- (안 제29조) 도청이전신도시 내에 경상북도는 26개소 설립 예정(7개소 기건립), 충청남도는 11개소 설립 예정(9개소 기건립)¹⁾
 -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경우 교육청 예산지원이 예상되며, 충청남도는 도비와 교육청 예산이 함께 지원되고 있음
 - 현재 학교설립 개소수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통하여 발표되었으나, 실제 연도별 학교설립 예산은 [참고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심사중으로 현시점에서 이를 확정하기 곤란함
- (안 제36조)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기 곤란함
 - 충청남도는 2010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용중(2010~2024년 총 788억원 운용)
- (안 제44조)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1) [참고자료 1]과 [참고자료 3]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연도별 사업비(안)는 [참고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1동을 건립(총사업비 261억원)
- (안 제47조 및 제49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은 현시점에 부과 및 징수액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50조) 경상북도는 산업단지 지원계획이 불확정적으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바 있음(국비 408억원)

[표 3] 재정수반요인별 추계현황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사유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	• (추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29조)	—	• (미대상) 기 시행: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 설립·운영 지원사업이 추진중 - (경상북도) 총 26개소 설립예산 기건립(7개소), 향후 계획(19개소), 관련 예산계획안은 [참고자료 3] 참조 - (충청남도) 홍성군(초등4교, 중등 2교, 고등 1교), 관련 예산계획안은 [참고자료 1] 참조 예산군(초등2교, 중등1교, 고등1교), 관련 예산계획안은 [참고자료 1] 참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안 제44조)	—	• (미대상) 기 시행 - (경상북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정(2022~2029년) 부지 6,000㎡, 연면적 5,867㎡ 관련 예산계획안은 [참고자료 2] 참조 -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1동 건립(261억원, 국비 160억원, 도비 101억원)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안 제36조)	×	• (제3호) (경상북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추계정소요를 추산하기 곤란함 ※ (충청남도) 2010년에 회계를 설치하여 2024년까지 약 788억원 운용하였으며, 도비 100%, 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예정(기 시행사례 참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안 제47조)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	• (제3호) 감면대상 국유재산의 면적·이용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 부재로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기 곤란함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사유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48조)		• (제3호) 센터 설치의 방식, 조직·인력규모, 운영비, 출연 및 보조 등의 재정부담 주체와 부담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산하기 곤란함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49조)		• (제3호)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추산이 곤란함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안 제50조)		• (제3호) (경상북도)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충청남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기 완료사업으로 참고) - 사업기간 : 2016~2022년 완료 - 총사업비 : 530억원(국비 408억원, 지방비 122억원) - 사업규모 : 총연장 3.9km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지역은 충청도청 신도시 개발사업과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2개 지역에서 추진중이며, 추계기간 동안 신규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도청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구 분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및 예산군 삽교읍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면 적	9,960,447㎡	10,965,784㎡
사 업 시행자	충청남도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 업 기 간	2007 ~ 2027년	2010 ~ 2027년
국토교통부	○ 충청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개설공사	○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개설공사

구 분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지원사업	- (사업규모) L=8.427km - (국비) 713억원 - (사업기간) 2008~2015년	- (사업규모) 3개 노선 L=18.2km - (국비) 1,175.5억원 - (사업기간) 2012~2022년 * 국비는 '20년까지 지원 완료
舊, 청사	○ 舊 충남도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 (2018)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사용 중	○ 舊 경북도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 (2018(당초), 2022(변경)) ○ 현재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및 유관기관이 입주하여 사용 중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본 추계에서는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며, 추계기간 동안 현재 도청이전 사업이 시행중인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사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²⁾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유사사례 평균 사업비로 추계함
-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중인 2개 지역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2) 광역시도별 도청 및 도청소재지 현황

광역시도	도청	도청소재지
경기도	경기도청	수원시
강원도	강원도청	춘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청주시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예산군·홍성군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안동군·예천군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창원시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전주시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

소요비용을 추산함

- 현재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은 충청도청 신도시 개발사업과 경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등 2개 지역
- 추계기간 동안 이들 신도시 개발사업만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기, 규모 등은 현재 알 수 없어 2027년에 시행되고, 유사 사례의 평균사업비 수준일 것으로 가정함

□ 전국 개별도시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유사사례를 검토한 결과 평균 10억 3,3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5] 유사사례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고기관	사업년도	사업비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김해시	2025	800
김포시 도시발전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김포시	2025	739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2025	795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인천광역시	2024	1,83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용역	대구광역시	2024	998
평균			1,03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0억 6,700만원(연평균 4억 1,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6]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도시 수(a, 개)	2	-	-	-	-	2
사업비 단가(b, 백만원)	1,033	-	-	-	-	-
추가재정소요(a×b)	2,067	-	-	-	-	2,067

주 1. 추계기간 동안 도청이전신도시는 경상북도, 충청남도 도청 이전 2건으로 가정하며, 사업비는 유사사례 평균 사업비를 적용함

2.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예상되는 도청이전신도시는 경상북도, 충청남도 도청 이전 2건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 평균 사업비를 적용한 결과로서,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충청남도 교육재정지원 학교별 예산 세부내역

충청남도 제출자료
(기준년도 : 2026년 1월)

1. 교육재정지원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 및 계획

가. 초등학교설립

학교명 (설립일)	재원구분	소요예산(백만원)	
내포초등학교 (2013.3.이전)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473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16,629
한울초등학교 (2016.3. 이전)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442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21,879
홍북초등학교 (2024.3.개교)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442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36,204
홍주초등학교 (2026.3.개교)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731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41,240
보성초등학교 (2018.3.개교)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8,130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16,690
합계			156,860

주: 용동초등학교(가칭)는 설립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 검토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나. 중학교설립

학교명 (설립일)	재원구분	소요예산(백만원)	
내포중학교 (2013.3.이전)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473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14,602
가칭 주촌중 (2025.3. 개교)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863
	사업자부담(기부채납)	설계비	1,740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42,577
덕산중학교 (2018.9. 개교)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1,554
	교육청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17,798
	지자체	체육관(50%)	8
합계			81,615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다. 고등학교

학교명 (설립일)	재원구분	소요예산(백만원)	
홍성고등학교 (2016.3. 이전)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2,618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31,449
덕산고등학교 (2018.9. 개교)	교육청, 도비 (각각 50%)	토지매입비	2,660
	교육청 100% (교부금 및 자체재원)	시설비(개교경비 포함)	19,580
합계			56,307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참고자료 2] 경상북도 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안

경상북도 제출자료
(기준년도 : 2026년 1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 '29(7년간)
- 총사업비 : 17,805백만원(지특 11,105 도 1,428 군 5,272)
 - ※ 부지매입비 등(1,940백만원) 추가 부담(군비)
- 위 치 :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신축)
 - 대지면적 : A=6,000m²
 - 연 면 적 : A=5,867m²(지상 4층)
 - 사업비 산출내역
 - 설계비 : 510백만원 - 감리비 : 1,151백만원
 - 공사비 : 12,684백만원 - 부대비 : 27백만원
 - 예비비 : 1,493백만원 - 부지매입비 : 1,940백만원(군비)

□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총 계	17,805	40	190	1,232	1,283	3,487	11,573
지 특	11,105	-		510	500	2,042	8,053
도 비	1,428	-		65	64	262	1,037
시군비	5,272	40	190	657	719	1,183	2,483
기 타	-	-	-	-	-	-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2. 추진상황

- '22. 2. : 지식산업센터 수요조사
- '22. 8. :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2. 12. :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23. 4. ~ 10. : 타당성 조사(보완) 및 수요조사 용역 완료
- '23. 8. :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
- '23. 10. :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4차)
- '24. 3. : 토지매입 계약체결
- '24. 3. ~ 5. : 사업신청 및 중기부 타당성 검토 통과(적합)
- '24. 9. ~ '25. 2. : 건축기획 용역 시행 및 공공건축 심의
- '25. 3.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5. 7.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

3. 2026년 예산소요액(예상)

- '26년 예산소요액 : 1,283백만원 (지특 500 도비 64 지방비 719)
 - 세부산출내역
 - 설계비 : 713백만원 • 부지매입비 : 570백만원

[참고자료 3]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학교건설계획안

경상북도 제출자료
(기준년도 : 2026년 1월)

□ 도청신도시 학교신설 및 신설예정 현황

구 분	단설유치원	초	중	고	대	비 고
1단계 개발지구	3 (꿈빛, 새빛, 단샘)	2 (호명초, 풍천풍서초)	1 (호명중)	1 (경북일고)	—	완료
2단계 개발지구 (학교용지수)	6	6	4	2	1	예정

주: 1단계 개발지구내 병설유치원 2개원(풍천풍서초병설 2019.3. 개교, 호명초병설 2019.3. 개교)은 미포함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 2단계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추진 현황

- 2023.1.31.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의 첫 공동주택 2,147세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
- 이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초1, 중1)를 마련하여 2023년 2월 교육부에 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년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

학교명	사업비		도비지원	비 고
	건축비	용지비 (무상)*		
(가칭)도양초	498.2억원	—	해당없음	‘25.12월 : 설계완료 ※공동주택 착공시 공사발주 추진예정
(가칭)호명중	367.1억원	—	해당없음	‘25.3월 : 설계완료 ‘25.6월 : 공사착공

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 무상공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